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3. 12(목) 10:00

제2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67호
- 나. 제 출 자 : 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2. 28.
- 라. 회부일자 : 2020. 3. 2.

2. 제안이유

금천구 보훈회관 시설 이용료 징수 등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보훈회관 시설에 대한 이용료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제7조의3)
- 나. 시설 이용료 징수기준 및 감면기준을 정함(안 별표 1, 별표 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3)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
 -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기관: 해당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 2020. 2. 6. ~ 2020. 2. 26.(20일 이상)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개정 배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건립된 금천구 보훈회관 시설의 주민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료 징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7조의2, 제7조의3은 각각 신설 조항으로 보훈회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안 별표1에서는 보훈회관 이용에 대한 이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안 별표 2에서는 이용료 감면기준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보훈회관 시설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 등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이며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탁 시설의 이용료 징수는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6항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시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